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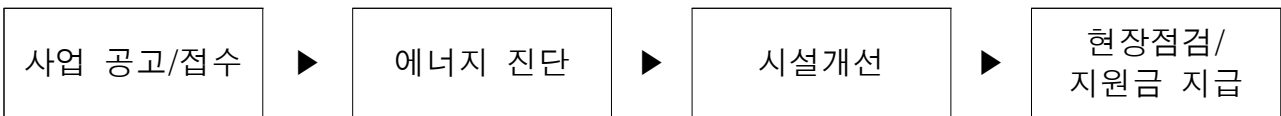
경기도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인식 확산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2024년 경기도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8.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장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절감 방안을 발굴하고 시설개선을 연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 사업내용 :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을 연계한 사업장 원스톱 지원



- 지원규모 : 603백만원

구분	남부(21개 시·군)	북부(10개 시·군)
해당 지역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남부/북부 지역별로 모집하며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일부 조정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년도('23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000TOE¹⁾ 미만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²⁾·중견기업³⁾

※ 경기도 산단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 1)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1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4,367MWh), 휘발유(1,290천L), 경유(1,109천L), B-C유(1,002천L), LNG(981천Nm³), LPG(660천Nm³)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해 공고일 기준 12개월간 사업장 이전(주소변경 등) 사실이 없어야 함

○ 참여제한

- 전년도 동 사업 시설개선지원 수혜업체(격년 신청가능)
- 최근 2년 이내 시설개선지원 선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을 포기한 업체(정당한 사유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 수혜업체
- 휴·폐업, 부도, 기업회생절차, 파산선고 중인 경우
-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구분	에너지 진단	시설개선 비용 지원
지원 금액	무상 진단	공급가액 기준 최대 천만원
지원 내용	▶ 수요자 맞춤형진단 ·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설비 및 개선 희망 설비에 대해 집중 진단 실시 · 에너지사용량 측정을 통한 시설개선 효과 분석 등	▶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을 하는 경우 물품 구입 비용의 50% 이내 지원
비고	지원금은 사업장을 진단하는 진단기관에 지급(사업장 당 최대 2백만원)	본 사업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은 사업장에 한함

* 지원금액 산정 시,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원

○ 지원품목 ([붙임] “원스톱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대상 품목” 참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는 설비

3. 지원사업 신청

가. 에너지 진단

1) 신청자격 :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0TOE 미만의 경기도 내 사업장

2) 신청기간 : '24. 5. 21.(화) 10:00 ~ 5. 24.(금) 18:00까지

※ **선착순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진단은 최장 3개월까지 소요 가능

※ 경기도 산단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3)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nergy.or.kr) → 참여하기

※ 제출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에너지 진단 신청서류		구분	비고
1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온라인 진단 신청서	필수	온라인 서식 작성
2	지원신청 관련 동의서 1부	필수	별지 1
3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4	진단 희망 설비별 사진 2장 이상 ※ 설비 1장 + 명판 1장(육안 식별 가능토록 촬영)	필수	
5	건물자가 : 해당 사업장 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물임대 : 해당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필수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발급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필수	
7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필수	
8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입증서류(월별 전기, 가스, 유류 등 납부 고지서,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 1부 ※ 전기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약전력, 사용량, 청 구액 등이 표시된 '고객종합정보내역' 을 제출. 한전 고지서 로 에너지사용량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에너지사용량 산 정 자료 제출(구분 제출이 어려운 건물임차 사업장 등)	필수	
9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 증빙 서류(산단 RE100 참여기업 확 인서 등) ※ 발급문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RE100추진팀(031-985-0573)	해당 시	우선지원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가 복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공고일 이후 유효할 것(유효기간 미준수 시 인정 불가)

5) 선정결과(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이후)

- 선정대상자에 한해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홈페이지에 공지

※ 신청이 완료되어도 선착순 후순위의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를 진행하지 않음

나. 시설개선

1) 신청자격 : 본 사업의 에너지 진단결과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 에너지 절감률 5% 이상이며 투자비 회수기간이 1년 이상 등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며 지원이 필요한 기업
- 非노후설비(2021. 1. 1.부터 제조된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개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발급이 확인된 기자재 구입에 한하며, 사업장 당 1개의 품목만 지원 가능
- 교체인 경우 기존 설비와 동일 용량 이하로만 시설개선 가능

2) 신청기간 : 추후 개별 공지 예정

3) 신청서 등 제출서류

시설개선 제출서류		구분	비고
1	경기도 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온라인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필수	온라인 서식 작성
2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별지 2
3	시설개선 계획서 1부	필수	별지 3
4	설비 구입 견적서 3부	필수	최저가 적용
5	시설개선 예정설비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1부	필수	
6	구입 예정설비의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필수	

4)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www.ggenergy.or.kr) → 「참여하기」
- ※ 시설개선 참여승인 결과는 신청 마감일 후 최소 2주 이후 개별 통보
- ※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계좌 상태 확인 요청

5) 신청조건

- 개선 시설(설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계량기)설비 설치
필수사항이며, 시설(설비)구입비용에 계측설비 포함 가능 (단,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제어 기능이 있는 품목(EMS 등)의 경우 계측설비 설치 제외 가능)

4. 추진절차

업무절차	업무내용
참여 신청/접수 (신청자 → 진흥원)	에너지진단 신청자 모집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접수)
▼	
진단 대상 선정 진흥원	에너지진단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진단 실시 및 보고서 안내 (진흥원, 진단기관 → 신청자)	- 진흥원과 협약한 에너지 진단기관을 통해 진단 실시 (일정 개별 안내) - 진단보고서 안내 및 시설개선 참여 절차 안내
▼	
시설개선 신청자 모집 (신청자 → 진흥원)	시설개선 신청자 모집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 접수)
▼	
시설개선 지원 승인 (진흥원 → 신청자)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및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승인
▼	
시설개선 실시 및 완료 보고 (신청자 → 진흥원)	- 신청자의 시설개선 실시 및 비용 완납 - 시설개선 완료 보고
▼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진흥원)	- 시설개선 완료 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신청 순위(선착순)에 의거하여 적합여부 검토 후 지원

※ 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5. 신청 시 유의사항

- 에너지진단 온라인 신청서 작성의 주요 기재사항(사업장주소, 담당자 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 희망 진단품목 등)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향후 추진과정 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에너지진단시 진단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판단하여 진단 및 시설개선 승인을 하므로 **자격미달인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 중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자 및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이 보유한 설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 되지 않는 설비 및 평소에 사용하는 상용설비의 대신 또는 보조로 사용되는 예비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에너지 진단 신청과 시설개선 지원 신청은 별개이므로 에너지 진단 실시 후 시설개선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개선 지원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 진단을 신청한 해당 기기(설비)의 에너지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전용 계량설비(예: 기기전용 가스·유류·수도 유량계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진단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선정 전 신청자가 임의로 시설개선을 진행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설비구입비 확인을 위한 견적은 3개 이상의 견적서(최종견적서 포함)를

제출하되, 제출치 못하는 경우는 증빙서류(특허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개선의 경우 사업 참여 승인일로부터 모든 사업장이 **6주 이내에** 시설개선 및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하며(상황에 따라 시설개선 기간 조정),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승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설개선 승인 선정자는 시설개선 **비용을 완납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이 완료된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시설개선 참여 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수량, 모델명 등), 시설 구입비용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수혜자는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당해 연도 설치한 시설(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이 요청할 때 해당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중 경기도 지원금에 해당하는 보유분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혜자는 권리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고지와 승인을 얻어야 함

6. 기타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
(연락처 : 031-985-0834, 이메일 : hyejin@ggeea.or.kr)

8. 붙임

- * 붙임 :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 대상 품목
- * 별지1 : 지원신청관련 동의서(에너지진단 신청자 필수 작성)
- * 별지2 : 원스톱 지원사업(시설개선) 신청서
- * 별지3 : 시설개선 계획서

[붙임] 원스톱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 대상 품목

번 호	설비명	구분	적용기준
1	공기압축기	효율관리기자재 (변속형만 지원)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 압축비가 1.3 초과, 토출 압력이 30~1,000kPa 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 - 스크류식: 전동기출력 15kW 초과~110kW 이하
2	터보압축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 압력비 1.3 초과 또는 송출압력 30kPa 초과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터보형압축기 - 종합효율 = 이론단열공기동력 / 구동부 소요전력 - 유량별 종합효율 (64%이상~73%이상)
3	원심식 송풍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 압력비 1.3 미만 또는 송출압력 30kPa 이하인 직동, 직결 및 벨트 구동의 원심식 송풍기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 160mm~1,800mm) - 전압효율 = (송풍기 출력)/(전동기 구동 소요전력) - 호칭별 전압효율(43.5%이상~81%이상)
4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상용, 수중용만 지원)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200mm 이하인 터보형 펌프 - 토출량 A효율(가장 높은 효율) 이상, 규정 토출량 범위 B효율(제작자 보증 효율) 이상
5	삼상 유도전동기	효율관리기자재 (11kW 이상~375kW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 정격출력 11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 -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
6	인버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220kW 이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 전동기 부하조건에 따라 에너지절감 가변속 운전이 가능한 최대용량 220kW 이하 - 효율 96% 이상(7.5kW 이하), 97%이상(7.5kW 초과~220kW 이하)
7	향온향습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정격냉방능력이 6kW 이상 35kW 이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 35kW (30,100kcal/h) 이하 - 냉방EER(2.3~3.2 이상), 난방 COP(0.97 이상) 등

번호	설비명	구분	적용기준
8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효율관리기자재 (효율등급 1등급 이상)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 실외유닛의 정격냉방능력이 20kW 미만인 냉방전용기기 또는 단일 실외유닛의 정격냉방용량이 20kW 이상 70kW 미만인 냉난방겸용기기
9	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정격냉동능력 1,758kW(500USRT) 이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술기준 > ○ 에너지효율(kW/USRT) 0.7이하 - 에너지효율(kW/USRT) = 정격냉동소비전력(kW) ÷ 정격냉동능력(USRT)
10	원심식 냉동기	효율관리기자재 (정격냉동능력 7,032kW (2,000USRT) 이하)	< 효율관리기자재 기술기준 > ○ COP 5.02이상(300USRT 이하), COP 5.41이상(300~2,000USRT 이하) - COP = 표준냉동능력(kW) ÷ 표준냉동소비전력(kW)

※ 효율관리기자재 중 동급용량의 1등급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등록제품 중 가장 높은 등급설비 인정

동 의 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을 신청한 당사는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중복지원 금지사항 동의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정보 및 이용목적] 에너지 사용 실태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신청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에너지(전력, 유류, 도시가스 등) 관련 고객번호(사용계약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4년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 ☐
	○ [이용목적]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 및 원활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동의	○ 사업 수혜를 받을 경우, 지원받은 시설(설비)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해당 시설(설비)을 철거하거나 동 사업 목적에 반하게 활용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귀사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 사업 수혜를 받을 경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설치완료 후 차년부터 3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요청할 때 해당 데이터 보고 등에 적극 협조·응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 사업 수혜를 받을 경우, 시설(설비)개선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가운데 지원비율에 해당되는 탄소배출권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처분할시에는 반드시 사전고지와 승인을 받을 것이며 위반할시에는 귀사의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시설개선 계획서

1. 주요시설 및 에너지 사용 현황

◎

◎

구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에너지 사용량			

※ 사업장 주요시설 및 에너지 사용 현황 기재

※ 업종 및 주요 생산품목 현황 기재

※ 에너지 사용량 : 최근 1년 동안의 사업장 전체 사용량 기준이며, 수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

2. 시설개선 목적 및 필요성

◎

◎

※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기재

※ 시설개선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기대효과 등 기재

3. 사후관리 계획

◎

◎

※ 유지·보수, 담당인력 운용계획 등 사후관리계획 작성

※ 에너지 절감효과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법 등 작성

4. 시설개선 현황

1) 개선 전

시설(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제조 연도 (설치 연도)	용량	단위	대수

주요특징	◎ ◎ ◎ ※ 기존 설비의 용도 및 기능, 문제점 등 기재	
관련 사진	※ 해당 설비 전경사진	※ 해당 설비 명판사진

2) 개선 예정

시설(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획득 (증빙서류 필수)
					☐ 고효율기자재 ☐ 효율관리기자재 ☐ 기타()

주요특징	◎ ◎ ※ 개선예정 설비 규격, 에너지 효율 등 정보 기재 ※ 개선예정 설비의 용량이 개선 전보다 상향될 경우 사유 기재	
관련 사진	※ 교체예정 설비 제품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 교체예정 설비 제품사진 또는 이미지 첨부

※ 에너지효율 관련 인증서류 제출(필수)

※ 교체예정 설비 규격, 에너지 효율 등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 제출

5. 설비 구입비 산출내역

품목	규격(용량 등)	단가(원)	수량	금액(원)

※ 실제 구입 예정 설비 금액 작성(부가세 제외)

6. 에너지 효율개선 효과 (진단보고서 참조)

1) 예상 감축량

개선 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 후 에너지 사용량			예상 감축량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2) 예상 감축 금액

개선 전 에너지 사용금액			개선 후 에너지 사용금액			예상 감축 금액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연료 (백만원/년)	전력 (백만원/년)	합계 (백만원/년)

3) 절감률 및 투자비 회수기간

절감률(%)	투자비(원)	투자비 회수기간(년)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제공한 진단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추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산출근거 데이터 별도 제출
- ※ 개선예정 시설(설비)기준으로 작성하며, 수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석유환산톤(TOE)은 최근 기준(에너지법 시행규칙 참조)으로 작성

7. 에너지절감 외 기대효과

◎

◎

※ 에너지 절감효과 이외의 기타 기대효과(수선유지비 감소, 생산량 증가 등) 작성